

# Engineer's Instruction of Work Suspension ; 공사감독의 공사 중단 지시

**A** : According to the FIDIC Contract(Red Book), Engineer may at any time instruct the Contractor to suspend work. In this regard, what could be the main causes for suspension?

**B** : Virtually, there is no specific explanation as to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Engineer can or should instruct a suspension of works in FIDIC Contract.

**A** : Then, what if the Contractor suffers damages from suspension of work?

**B** : FIDIC Contract provides that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to an extension of time for contract and/or cost incurred in the period of suspension unless the causes of suspension are attributable to him.

---

**A** : FIDIC 건설공사 표준계약(Red Book)에 의하면 공사감독은 항시라도 계약자(시공자)에게 공사중단을 지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공사중단 지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?

**B** : 실제로 FIDIC 규정에는 공사감독의 공사중단 지시의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.

**A** : 그렇다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?

**B** : 계약자는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이들 손실, 즉 기간연장 및/또는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.

(1) FIDIC 표준계약에 작업중단 사유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작업중단 사유로는 ① 재해방지 등 응급조치의 경우 ② 계약자(시공업자)의 중대한 계약위반 또는 과실 ③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하겠음.

(2) FIDIC에서 발주자(공사감독)의 작업중단 권한 행사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 이유는 공사목적과 발주자의 공사정지 권한행사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간주됨.